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 원천징수 제도

가. 원천징수의 의의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공제·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징수방법을 말한다.

즉, 역사적으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에서 출발하였다.

원천징수의무는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성립·확정된다. 한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해도 현실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원천징수는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납세자에게 지급할 소득으로 해당 조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의무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나. 원천징수의 기능

소득 지급 시에 미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과세누락(탈세)을 방지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소득세 등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다. 원천징수 법률관계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 당사자는 국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소득귀속자)가 있으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에서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상 납부의무자가 된다.

한편,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원천납세자에 대하여 직접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540 판결).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라.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그 밖에 청산인, 합병법인, 채권 등 매수법인 등이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영리법인·비영리법인·외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지위는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보는 위탁징수기관설이 다수설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라. 원천징수의 구분

원천징수는 납세 및 신고의무의 종결 시점에 따라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분할 수 있다.

(1)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납세의무자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여야만 모든 의무가 종결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미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다.

한편,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절

차를 통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및 신고의무가 완결된 것을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된다.

마.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개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일정한 봉사료, 법인세 등이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원천징수

(가) 이자·배당소득

① 원천징수 대상 이자·배당소득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 대금이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 등이 있다.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한다.

또한 물건의 판매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을 금융업자 이외의 자에게 만기전 할인하는 경우 어음의 이자와 할인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② 원천징수 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사유별로 정한 일정한 날.

③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①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매월분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대상 소득이다.

②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1.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란 부양가족수와 월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놓은 속산표를 말한다. 월급여는 실제로 한 달 받은 급여의 총액에서 비과세 및 학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별도의 계상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연말정산이 필요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교직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와 관계 없이 산학협력단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사전-2017-법령해석 소득-0125, 2017.4.27.).

②-2. 상여 등의 경우

상여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 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또한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지급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 등 방법에 의한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3. 인정상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에 의한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게 되면 그 통지서에 당해 소득의 지급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야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인정상여에 의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뒤따르고 그 중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그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시점에 당해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8.25.선고 2006두3803 판결).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경정으로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천납세자에게 분리징수할 수 있다.

(다) 연금소득

① 원천징수 대상 연금소득

매월분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②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 등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공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에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적연금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적연금은 연금을 수령한 날에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일정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사업소득

①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사업자, 법인세 납부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②-1. 일정한 의료보건용역 소득

소득세법에 열거된 의료보건 용역과 수의자 용역. 다만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등 일정한 의료보건용역은 제외한다.

②-2. 개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인적용역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한 인적용역

- ㉠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 등 이와 유사한 용역
-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②-3.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용역 중 일정한 용역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 용역

② 일정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③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 용역

④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②-4.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음식·숙박용역·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마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과 관련한 봉사료로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원천징수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해서 적은 미용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5, 2018.1.23.).

이때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③-1.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2.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 연말정산 시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한편,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한편,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마) 기타소득

①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상금, 경품 당첨금, 승마 및 승자투표권 등, 저작권이나 각종 권리 등의 양도 및 대여, 사용의 대가, 계약 위약 배상금 및 보상금 등의 우발적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서화,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종교인 소득 등

※계약 및 배상금 예시

-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②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 금액에 일정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기타소득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영업권 등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한편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익금산입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종교단체 소득 지급시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에게 종교소득 지급시에는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한편,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월의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482, 2019.10.4.).

(바) 퇴직소득

① 원천징수 대상 소득 퇴직소득

②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다만,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하여 지급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법인세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의무자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의 이익이며,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채권이자를 제외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납부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기별 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의무

(가) 대상소득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 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농·축·수산물 판매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납세의무자가 일정인원 이상인 조합.

(나) 원천징수방법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의 조합은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다음 날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퇴직소득.

(6)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중 투자신

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 그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바. 원천징수 위반에 대한 제재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제13조). 이 경우 징수하지 않은 세액은 벌금으로 부과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정기간 내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위반사실이 있는 한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3.14. 선고 85누4521 판결)

2. 연말정산

가. 의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일정한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기 전에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 및 수입금액의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한편,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퇴직하는 때에 다시 연간 총급여액 및 총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편의

를 제공하면서 징세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통산하여 하나의 근로소득세로 정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 계속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내국인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다만,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에 연말정산을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2) 연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한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고 이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한편,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4) 내국인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은 거주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다만, 인적 공제 등 공제내용에 차이가 있다.

(5)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외국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과세, 공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공제 누락분 추가신고와 경정청구

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

②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은 사업자(보험모집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방문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

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음료품 배달원).

한편,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이미 지급된 일부 모집수당을 누락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누락된 수당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2019.6.5.).

(2)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한다. 다만,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소득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적연금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계노령연

금·연계퇴직연금.

(2) 연말정산 시기

공적연금 소득 지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금액에 일정한 공제와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을 해당 연금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는 연금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가. 개념

지급명세서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소득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사업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말한다. 지급명세서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지급명세서, 일용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

지급명세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로 의제된다.

나.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책정 등에 활용된다.

다. 제출대상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정한 봉사료, 일정한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일정금액의 이자소득금액. 한편,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음식·숙박,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마사지 업소 및 과세유흥장소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자의 봉사료를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하여야 한다.

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해 받는 당첨금 중 건당 10만 원 이하, 비과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과 실비변상적 급여 중 일부,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 경기투표의 구매가 받은 환급금이 500만 원 미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가 받는 환급금이 10만 원 미만, 봉사료수입금액 중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소득.

마. 제출기한

(1) 이자·배당소득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그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용근로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받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일수,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연금소득

공적연금 외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소득(봉사로 포함)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받기 마

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퇴직소득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사업자가 소득세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